

회사법, 논문에 대한 법률적 및 기술적 보완에 관한 안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



2022년 2학기 회사법 월D, 수D		/	제출 일자 (2022년 11월 15일)
담당 교수님			서완석 교수님 201833236 박성우 201932414 김도현 201932408 곽민규 202132999 한수민 202132940 서지후
팀원			

目 次

I. 서론

1. 논문에서의 법률적 관점에서의 논점에 관한 문제 제기
2. 논문에서의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의 논점에 관한 문제 제기

II. 본론

1. 법률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 1)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자주주총회의 문제점
- 2) 상법 제364조의 입법 취지
- 3) 상법 제364조의 소집지 의미
- 4) 전자주소의 기재
- 5) 본인 확인 문제
- 6) 메타버스 공간상의 문제
- 7) 소집 절차의 전자화
- 8) 출석 여부의 판단 문제

2.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 1)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있어 발생 가능한 보안상의 문제
- 2)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있어 발생 가능한 비용적 측면의 문제
- 3)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있어 발생 가능한 정보격차 등의 문제
- 4) 하이브리드 형식의 전자주주총회의 문제

III. 결론

IV. 느낀 점

V.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VI. 구성원들에 대한 자체 평가

I. 서론

1. 논문에서의 법률적 관점에서의 논점에 관한 문제 제기

주식회사는 원래 소유자인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것이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주주총회의 많은 기능들이 이사회에 위임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주총회는 여전히 상법상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며,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합병, 해산, 재무제표 승인 등 기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¹⁾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상법 제369조에 따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상법 제369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 중 하나로 특별한 법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정관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한 조항이다. 이 상법 조항이 주주민주주의를 뜻하며 주주민주주의는 곧 1주 1의결권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주주들의 무관심,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는 형해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극복하고 주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주주총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통신매체의 등장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주주총회 형해화를 극복하고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주주총회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COVID-19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비대면, 첨단 방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부흥하고 있으며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린 듯하다.²⁾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전자주주총회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최근에는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하지만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상법은 아직은 이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점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주주총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논문에서의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의 논점에 관한 문제 제기

인터넷과 통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적 다양화가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빅데이터,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21세기 기술혁신의 이른바 4차를 뛰어넘은 5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재 회사의 주주총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고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상주주총회’의 개최 방식 도입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가상주주총회’란 기존의 방식처럼 한정된 물리적 장소에서의 대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가상의 전자적 공간에서 완전한 인터넷(오디오 전용 또는 비디오가 있는 오디오) 만으로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형태이다. 앞서 말했듯이 COVID-19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이 비대면, 첨단 방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의 시스템(줌, 웹엑스 등)이 부흥하고 있으며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451쪽

2) 정지수, 자본시장포커스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 자본시장연구원, 1쪽

3)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10/28/3TQESXBPWNF6FMZVD3FXKW5VY
M/(조선일보) ‘오프라인 주주총회 사라질까’… 본격 시동건 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하지만 이러한 가상의 전자주주총회 즉, 비대면 주주총회를 실행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해킹, 비밀유지, 가상 서버의 관리, 그에 부수되는 비용, 보안,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격차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때문에 가상 주주총회는 현재 대면 주주총회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되어 극도의 효율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의 시점에 있어서 아직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따라서 더욱이 발전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용화되기에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주주총회의 기준에 없던 빅데이터,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를 실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 및 적용의 여부에 대해 다뤄보자 한다.

그 논점의 첫 번째,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가상의 공간 안에서 그리고 전자적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행위에 있어서 보안의 문제이다. 먼저 제3자에 의한 해킹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란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접두어로서 가상·초 뜻하는 그 리스어 '메타(meta)'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그리고 이 용어는 기술이 아닌 일종의 개념으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과 뒤섞인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세계의 집합이다. 사용자들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그리고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digital universe)라고 할 수 있으며⁴⁾ 이는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⁵⁾ 블록체인이란 중앙에 집중된 권한 없이도 컴퓨터 네트워크의 여러 '노드(node)'에 걸쳐 동일한 정보 집합을 저장하는 분산 원장 시스템으로서 원장은 단일 위치 또는 단일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관리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어느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어느 누구라도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을 의미하며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⁶⁾

이러한 21세기 기술혁신, 기술 발전이 과학적 장치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안전성 및 보안성의 확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분명 메타버스 기술은 최근 진화를 거듭하여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시대를 향한 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노출, 영업 관련 주요 정보의 노출, 메타버스 내의 진입을 위한 인증과정에서의 오류 등의 문제가 충돌, 발생하기 다분하다.

4) 서완석,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가천 법학 (KCI), 2022, 86-87쪽

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8c6b93bdb1e4c1795804696e74fcdb5>

6) 서완석,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가천 법학 (KCI), 2022, 92-93쪽

블록체인의 경우 역시 그 안정성에 있어서 데이터의 복구 및 임의변경이 굉장히 어렵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집중형 서버 가상화 환경문제,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의 보안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의 보안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논문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예시로 든 핀테크 기업의 경우와 주주들이 모여 회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그 기술적 도입에 있어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핀테크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빅 데이터 따위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⁷⁾ 이러한 금융업 관련 서비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편리성, 고도화된 기술로서의 자동화 시스템의 이용이 적절하기에 혁신적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금융혁명이라 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그 총회가 이루어지는 방법에서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회의의 개최 방식으로 기술적 제도가 부수적으로 수반될 뿐 그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를 결정함’이라는 본질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메타버스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바타를 활용한 행위의 경우 본인에 대한 동일성의 판단 여부 등이 문제 된다. 다양한 메타버스를 이용한 서비스가 구현되어 실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보호 모델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공공업무 보호 관점에서의 보호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보완,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과정, 보호 모델의 제시, 이러한 보호 모델의 공공업무 보호에 관한 타당성 검증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위 문제를 극복하여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자적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회사의 주주들은 그들을 대변하는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바타들을 이용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자, 무권한자에 의한 아바타 이용 즉, 아바타라는 대리인의 투명성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주주라는 ‘본인’ 그 자체가 아닌 가상의 ‘아바타’를 통한 상호작용을 적법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이다. 위 기술들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며 관리, 유지 및 보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단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VR 고글과 그 외의 부수적인 액세서리 등을 모든 주주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수는 상대적으로 다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기에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 기기를 보급하기엔 비용적 무리가 있고 그 외에도 네트워크 망을 이용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클라우드, 데이터, 데이터 보관 비용, 보안 유지 비용 등의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 측의 개인부담을 이용할 것인지 혹은 정부의 지원을 요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7) 네이버 지식백과.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95%80%ED%85%8C%ED%81%AC>

다섯 번째, 인터넷과 통신을 기반으로 빅테이터,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21세기 기술을 도입한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주주 간의 정보, 환경 등에 관한 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큰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들이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마다 주식회사의 전자화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에선 스마트 기기도 형용화가 잘 되어있지 않고 네트워크 형성도 불안정하거나 보편화되어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방법의 이해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총회가 길어질 경우 가상 현실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소요가 발생해 이에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상현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방법이나 정보의 차이이다. 가상현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기업 내에서 따로 교육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자세한 조작 방법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활용능력 등은 직접 해보고 익숙해져야 가상주주총회를 하는 장점이 살아난다. 이런 것부터 원래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과 이 가상주주총회로 인해서 기술을 접하게 되는 사람이 주주총회 참여에 더 적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처럼 가상주주총회를 위한 기술 이용에 주주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몇 가지의 논점 중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래 본론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의 방식에 있어서 하이브리드형 주주총회의 전제가 되는 환경의 문제, 본인확인 문제, 주주총회 출석과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관한 문제, 재량권 남용의 문제, 재량권 남용과 대응되는 주주의 질문권 남용에 대한 문제, 의결권행사 방식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부분 역시 본론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법률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1)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자주주총회의 문제점

가상주주총회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빠르고 다양한 양의 질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들에게 익명으로 질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주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메일로 미리 질문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주주총회가 열리는 중에도 가상 질의응답 포럼을 통해 회사가 온라인으로 주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의사 진행 통제력을 높일 수 있어 대면 주주총회보다 더 많은 양의 질문을 다루고 주주들의 환기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⁸⁾. 하지만, 방대한 양의 모든 질문을 대답할 수 없는 현실과, 자칫 악의적인 내용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질문의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에 선택적으로 질문을 의장이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유리한 내용만 채택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의사운영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이메일 등으로 미리 또는 실시간 제출된 질문이 다른 총회 참가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어떠한 질문에 응답할 것인가를 의장이나 의장을 보조하는 임직원이 질문의 내용을 보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들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우호적인 질문만 선택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질문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므로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⁹⁾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굳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이 되리라고 본다. 예컨대, 누군가의 질문이 다른 총회 참가자에게도 공개되게 하여 이사진으로 하여금 질의를 선택을 못하도록 하거나 주주가 의장의 재량권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거나, 의사운영규칙 등을 사전에 마련 등이 있다.¹⁰⁾

2) 상법 제364조의 입법 취지

대한민국 현행 상법 364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상법 제364조의 입법 취지는 총회의 개최장소를 주주가 참석하기에 불편한 곳에 정함으로써 고의로 일부 주주의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¹¹⁾

그러나 마크로밀엠브레인(2020)¹²⁾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보소외 현상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보격차 심화를 체감 및 전망, 디지털 소외에 대한 우려하고 있으며, 정보소외로 인한 디지털 양극화를 우려하며 심각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¹³⁾ ‘최근 주

8) 서완석,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가천 법학 (KCI), 2022, 112쪽

9) 윤영신,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동향도입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2016) 81쪽

10) 김신영,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2021, 77쪽.

11) 권순일, 주식 상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06(제6판)

12) 온/오프라인 마케팅조사 · 사회여론조사 수행 및 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24년차 기업이다(잡플래닛)

13) 손녕선, 최지은/ICT ISSUE REPORT,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및 시사점/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07(22-01호)

변에서 사회의 빠른 변화를 쫓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에 그렇다 응답이 46%나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 세대 역시 역시 14)정보격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15)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아직 진정한 의미의 원격 주주총회는 개최된 바가 없다.16)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이브리드형 주주총회와 같은 중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3) 상법 제364조의 소집지 의미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법 제364조를 이해하기에 있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는 문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에서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볼 수 있는 가상공간은 사회적 규범들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여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여 가상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법 364조의 소집지의 의미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이다.

다수설의 입장에서 보면 ‘인접’이라는 개념 자체가 장소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접이라는 용어가 가상의 사이트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며 소집지를 인터넷상의 사이트로 확대 해석할 경우 본점 소재지도 인터넷상 사이트가 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상법상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으로 하나로서 인터넷상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기재하여도 적법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17)

따라서 상법의 소집지의 의미는 물리적인 공간이고 정관에 규정으로 소집지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상 사이트를 주주총회의 소집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18) 또한, 동조의 ‘지’의 개념은 최소의 독립행정구(시, 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고 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므로 물리적 장소일 곳을 요한다.19)

4) 전자주소의 기재

상법 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14)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두산백과

15) 김설인, 구혜경, “한국 2030 청년세대의 모바일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2018

16) 박준선, 벼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18쪽

17)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464쪽

18)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464쪽

19) 권순일 /주석 상법/한국사법행정학회/2021.06(제6판)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52조 제1항 제1호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으로써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52조의2 2항에서 전자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확실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²⁰⁾ 이메일을 법정기재사항으로 정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지겠지만,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5) 본인확인 문제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본인확인(입법적인 문제)]

현재 가상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8조의4 제3항에서는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상법 시행령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전자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으나²¹⁾, 이들 확인 수단은 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다 안전한 주주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²²⁾ 또한 메타버스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본인확인 문제와 관련하여 커스터 마이징(customizing)²³⁾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절차를 다 거쳐서 들어온 주주가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얼굴을 다른 주주의 얼굴로 설정한다면 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약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는데 취소를 하여 대면으로 참석을 하였을 때, 온라인상으로 이중접속을 하였을 때가 생긴다면 이중 투표의 문제도 발생 가능할 것이다.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 행사구분:대법원2020.6.11.선고…,

<[http://www.kasanlaw.com/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860](http://www.kasanlaw.com/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860>), 2022.11.10.>

21) 박준선, 벼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30쪽 정경영, 위 논문, 487쪽

22) 박준선, 벼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30쪽 정경영, 위 논문, 487쪽

23) 커스트마이즈(Customize)란 ‘원래 무엇을 주문 받아서 만들다.’라는 의미로, 이용자가 사용 방법과 기호에 맞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6) 메타버스 공간상의 문제



여있으면 장난을 친다던가 주주총회에 집중하기 어려워 총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7) 소집 절차의 전자화

문상일. (2018). 전자증권제도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주주총회 전자화 논의를 중심으로 -에서 소집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있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윤승영. 코로나19 이후 원격 주주총회 제도화에 대한 소고. 기업법 연구에서는 현행법에서는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회사가 적극 활용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소집절차의 전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자투표의 효용성은 제대로 증명되기 힘들 것이라고 나와있다. 이처럼 아직 소집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부분이 학자들의 의견도 대립하고 있다.²⁵⁾ 즉, 아직 완벽한 소집절차의 전자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8) 출석 여부의 판단 문제

현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회의장에 입장 및 퇴장을 통해 출석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에 로그인 및 로그아웃하는 것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로그인만 한 채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기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실제 의사진행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로그인을 한 이상 로그아웃을 할 때까지의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의 참가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는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단순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기에 출석인원의 수가 쉽게 변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결의 시에 아주 중요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된다.²⁶⁾ 따라서 결의에 들어간 이상 로그아웃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팝업창 이동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야 주주총회의 결의가 정확한 수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4) 김준호 동서울대 교수는 메타버스를 통한 강의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경희대
출처 : ZETAVERSE(제타버스엑스)(<http://www.zetaverse.kr>)

25) 윤승영. 코로나19 이후 원격 주주총회 제도화에 대한 소고. 기업법연구, 2020, 34(3), 113쪽

26) 윤영신.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동향도입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2016), 95쪽.

2.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1)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있어 발생 가능한 보안상의 문제

첫 번째로 볼 사안은 보안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메타버스 기반 다양한 플랫폼들이 대중화되면서 산업계 및 연구계에서는 메타버스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 창출, 비대면 상호 작용의 확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 관한 보안 위협 요소는 현시점의 기술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보장되지 않는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존 IT 환경에서보다 방대하고 예민할 수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구하며, 여러 IT 기술들이 결합된 시스템인 만큼 고려해야 할 보안 위협 요소들이 많다.²⁷⁾

이에 관한 메타버스 관련 해킹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2012년 12월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관리자 권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게임 내 재화가 이용자들에게 뿌려지고, 아이템 가격이 임의로 조작되는 등 게임 생태계에 피해를 입혔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로블록스 이용자 약 1억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
- ③ 2019년 4월 메타(옛 페이스북)의 VR(가상현실) 디바이스 '오클러스(Oculus)' 플랫폼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해커는 빅스크린 앱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해 사용자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²⁸⁾
- ③ 올해 2월에는 세계 최대 NFT(대체불가토큰)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가 해킹 사고를 당했다. 해커는 오픈씨의 회사 이메일을 사칭한 피싱으로 32명의 사용자가 NFT를 도난당했다.

위와 같이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이용, 다양한 분야, 범위로서의 활용 등 장점으로 인해 장벽 없는 세계화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용 등이 활발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가상자산 등의 침탈 등의 복합적 사회문제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관하여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환경에서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경우 주주들은 인터넷 네트워크망 내의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를 남기게 될 뿐 아니라 어떠한 동작, 개인만의 제스처, 안면 또는 신체의 동작 등의 개인정보를 남기게 된다.²⁹⁾ 개인 정보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정적인 개인정보가 있으며, 뇌파, 맥박, 아이트래킹, 위치정보 등과 같은 동적인 개인정보 또한 존재 한다.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정적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동적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적 및 동적 개인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함과 더불어 메타버스 상의 네트워크, 그 전자적 공간에 해당 정보를 남기게 된다. 또한 메타버스 이용을 위한 VR기기 및 그 부수적 장치를 이용하며 발생되는 다양한 생체정보 및 전

27) 나현식, 최대선. 메타버스 보안 위협 요소 및 대응 방안 검토. 정보보호학회지, 2022, 32(4), 19-32.

28) 서울 뉴시스, 이동현 기자, 2022.10.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30_0002033669&cID=13005&pID=13100

29) 이동혁.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위한 속성레벨 프라이버시 보호 메커니즘.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2022, 20(9), 1-11.

자적 공간으로 제공되는 개인의 민감정보 등의 데이터가 메타버스 내 서버에서 관리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메타버스 상의 가상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주 개개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어 그 위치정보에 대한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전자적 영상장치를 통해 비추어지거나 주주 개인의 IP정보 등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향하는 네트워크에 전송이 되기에 악의적 의도를 가진 제3자인 해커가 이와 같은 정보를 습득, 탈취하는 경우 주주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우 높은 수준의 고강도 보안 모듈이 필요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에 관하여 ‘주주 간의 의결’이 주가 되어야 하는 주주총회에 있어서 그 부수적 사항이 되어야 하는 주주총회의 ‘개최 방법’에 있어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더 민감하고 중시된다고 고려되는 사항은 주주의결에 대한 회사 내부의 정보에 대한 침탈 및 정보의 위, 변조 문제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된 회사 내부 정보 가령, 특별 결의로 이루어지는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해산 등의 중대사에 관한 결정 등이 악의적 의도를 가진 제3자의 전자적 해킹에 의해 위, 변조되어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관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도화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해킹에 의한 위, 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절대적 보안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그 제약사항이 따른다.³⁰⁾ 이에 관하여 블록체인의 기술적 제약사항은 개인정보보호의 부재, 보안모델, 제한적 확장성, 고비용, 숨겨진 중앙통제, 유연성의 부재, 임계크기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분산 합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 및 관리의 법적 효력 문제와 기술적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사용자 수용 부재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51% 공격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51% 공격이란 어떠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으로 단일 주체 혹은 조직이 대다수의 해시 레이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공격을 의미한다. 즉, 악의적인 주체자인 51% 공격자는 통제권을 쥐고 있는 도안 트랜잭션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발생시킨 트랜잭션을 되돌릴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이 성공하면 공격자들은 트랜잭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승인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트랜잭션이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연산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를 의미한다.³¹⁾ 즉, 이러한 51% 공격은 악의적 주체가 고의적으로 트랜잭션 순서를 변경하거나 제외하여 네트워크 운용을 방해할 수 있다.

30) 김정숙, 이야기. (2021). 블록체인의 한계점과 서비스 파급효과 진단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 대회 논문집, 41-42.

3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1258&cid=58430&categoryId=58430>

2)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있어 발생 가능한 비용적 측면의 문제

다음으로 볼 사안은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이다.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32)페이스북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등을 개발하는데 연간 약 1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메타버스를 주된 경영 프로세스로 이용하는 기업의 개발 비용과 비교하여 단순 주주총회의 가상적 개최 공간으로써의 개발 비용은 그만큼의 금액부담은 발생하지 아니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비용이 발생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외에도 메타버스 이용을 위한 VR기기 및 부수적 기계장치, 정보의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 정보의 보관을 위한 클라우드 등의 보관 등에 발생하는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 자체의 비용을 이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의 기업지원을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에의 지원에는 기업 운영을 위한 장비 지원도 포함된다. 33)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한계, 기업의 낮은 혁신역량, 예산 투입 대비 저성과 문제로 기업의 재정 지원 및 관련 지원제도의 효과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들이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고 그렇기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해당 문제를 보완할 수 역시 없다고 생각된다.

3)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있어 발생 가능한 정보 격차 등의 문제

디지털 기술적 다양화가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빅테이터,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21세기 기술로 전자화된 가상주주총회를 이용함에 있어 환경, 경제, 연령 등으로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들 간에 격차 문제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가상 주주총회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주주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편한 장비를 사용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장비를 사는데 부담이 되는 주주들은 보다 불안정하고 불편한 장비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는 불법적인 장비 구매나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장비 보급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기업에서 모든 주주한테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 무리가 있다. 다양한 나라에 주주들이 있는 회사인 경우 한명 한명 의결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부터 그들이 어디 사는지 등등 회사가 감수해야 할 요소가 많다.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말한다. 주주의 권리 중 대표적인 공익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 1주 1의결권이다.³⁴⁾

장비도 장비이지만 장비를 제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2) 최희우, 펁포인트 뉴스, 2022.10.25.

<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62>

33) 김수길, 현병환. (2022).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정부지원 활용 및 흡수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5(3), 449-476.

34) 네이버 어학사전, 의결권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e8f7e4eb8b44dc3bca6193a485209a0>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활용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격차가 생긴다.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거나 미숙함에 있어서 소통과 참여에 불편함이 생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나라마다 네트워크 발전 상태도 다 다르고,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어있고, 얼마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지 다 다르므로 격차가 발생한다. 어느 나라에선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있어 가상주주총회를 하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보다 발전이 저조한 나라의 주주들은 접근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같은 수준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 이런 기술을 접하는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고령층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를 사용하더라도 잣은 실수를 유발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 방법이 미흡하다. 이는 고령층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주주들 중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어민 등 특별한 상황에 놓인 주주들 또한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회의가 길어지게 된다면 적극성과 집중력 또한 대면으로 했을 때 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면으로 인한 정보 격차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년은 울고 청년은 웃다.>라는 기사가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은 인터넷과 모바일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고, 그 경험이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고령층은 이러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변화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³⁵⁾

② 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고령 층이 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령 층의 디지털 소외나 격차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³⁶⁾

이처럼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노력하기 위해 더욱 동기부여가 되게 하고 그만큼의 장점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남매일 - 코로나 공존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디지털 소외계층을 개인의 문제로만 탓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때다. 실물 경제가 아닌 디지털 경제 시대에 디지털 문맹 해소는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³⁷⁾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 자체에서는 가상주주총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주들이 최대한 원활한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4043

3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214182665734>

37)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55367568338717130>

4) 하이브리드 형식의 전자주주총회의 문제

가상주주총회와 대면주주총회의 장점만 살린 하이브리드도 완벽한 대책이 되지는 못하며 생각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문제점 그 첫 번째, 하이브리드형 주주총회의 전제가 되는 환경의 문제가 있다. 출석형 하이브리드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가 인터넷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인터넷 등의 수단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이나 통신장애 등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기업 측의 문제로 통신장애 등이 발생하고 그 결과 하이브리드형 출석 주주가 심의 또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주주총회 결의취소가 다투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출석형을 개최하고 운영하려는 기업은 현장주주총회와 하이브리드형 출석 주주 간 정보전달의 쌍방향과 즉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격이나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도입 가능한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소집통지나 로그인 화면에 하이브리드형 출석을 선택한 경우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형 출석에 필요한 환경(통신 속도, OS나 애플리케이션 등)이나 하이브리드형 출석을 위한 절차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여기서 기업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 방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출석형의 경우 현장주주총회 출석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통신장애 가능성을 고지받고도 하이브리드 출석을 선택한 경우, 즉 기업이 합리적 대책을 취한 경우에는 회사 측의 통신장애로 주주가 심의 또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본인확인 문제이다. 기업은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폐쇄를 통해 주주총회 출석 주주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출석형 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출석형 하이브리드의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 활용과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 활용, 고유 ID와 비밀번호 활용, QR코드 활용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보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 주주총회 출석과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이다. 일본 실무에서는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앞서 행사한 의결권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전자투표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을 계기로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서 만약 일본처럼 주주총회에 출석했을 경우 앞서 행사한 의결권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장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출석 주주의 의사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출석형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출석을 유지하는 등 주주의 의사 반영을 저해하고 무효표를 증가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 출석형 하이브리드에서는 의장이 온라인으로 출석한 주주에 의해 입력된 질문을 보고, 기업에 유리한 질문을 선택하여 답변하는 등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출석형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검토하는 기업은 의장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하는 등 의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이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재량권 남용과 대응되는 주주의 질문권 남용 문제이다. 출석형 하이브리드에서 온라인으로 출석한 주주는 의장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다른 주주의 동향이나 움직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질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활용해 수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주주의 질문 남용은 의사운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의결권행사 방식이다. 출석형 하이브리드의 온라인 출석 주주는 출석 여부를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중도 퇴장이나 형식적인 출석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기업은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을 그 사유 발생 당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29조 제1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동 규정 제33조 등). 그런데 출석형 하이브리드의 개최로 주주총회의 회의체성이 강화되면 주주총회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신고 업무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³⁸⁾

38) 권용수, 벼추얼 주주총회 개최·운영에 관한 쟁점 검토-일본 ‘하이브리드형 벼추얼 주주초오히 실무 가이드’를 참고로-, 한국상사법학회, 2020.

III. 결론

메타버스는 현재 다방면한 범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발전 가능성 역시 무한한 영역이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주주총회에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 많은 회사에 있어서 정보격차 등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할 주주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주주 민주주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현행 상법은 가상주주총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원격주주총회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 소외 계층의 인원들이 참석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회사를 살펴보았을 때 불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보였다. 또한 아직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될 입법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있다. 전자주소 기재 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련된 것이나, 본인확인 문제에 있어서 Id등의 도용의 경우 어떻게 할 명확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현 시점에 있어서는 메타버스 운용에 관한 사이버 해킹 범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앞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 체인 기술의 응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보의 절재적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엄격한 보안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있어서 혹여나 악의의 제3자에 의한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정보, 기업의 주요정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주주와 그 이해관계자 및 기업 그 자체의 막대한 손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아가 주주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지 않는 사람, 정해진 규칙-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등이 참여하면 이 형태의 주주총회의 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그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에 있어서 초기 비용이나 개발-개선비용 등 절감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폭은 더 커졌다고 생각하기에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 모호한 점이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기술적 문제 및 법률적인 문제로 이한여 인하여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보안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 더구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안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한들 그 효율성이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안의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를 실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주주총회의 개최 방식으로 뛰어넘는 어떠한 긍정적 범주에 속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또한, 메타버스는 현재 다방면한 범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발전 가능성 역시 무한한 영역이다. 가상 주주총회는 주주참여와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와 이사 및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³⁹⁾ 많은 장점이 있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는 메타버스 운용에 관한 사이버 해킹 범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앞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보의 절대적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엄격한 보안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있어서 혹여나 악의의 제3자에 의한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정보, 기업의 주요정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주주와 그 이해관계자 및 기업 그 자체의 막대한 손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⁴⁰⁾

39) 서완석,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가천 법학 (KCI), 2022, 112쪽

나아가 주주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지 않는 사람, 정해진 규칙-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등이 참여하면 이 형태의 주주총회의 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그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에 있어서 초기 비용이나 개발-개선비용 등 절감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폭은 더 커졌다고 생각하기에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 모호한 점이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이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보안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의 제, 개정 및 보안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한들 그 효율성이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안의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를 실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주주총회의 개최 방식을 뛰어넘는 어떠한 긍정적 범주에 속하는 사항인지 의문이 든다.

40) 권용수, 베추얼 주주총회 개최·운영에 관한 쟁점 검토-일본 ‘하이브리드형 베추얼 주주초오히 실무 가이드’를 참고로-, 한국상사법학회, 2020.

IV. 느낀 점

201833236 박성우

교수님의 논문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를 읽으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논문을 읽으며 비판할 부분을 물색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나마 작은 부분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교수님의 논문에는 그에 대한 해결책 및 의견을 담아 두셨다.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때문에 시기적인 관점과 현재의 기술적 관점에서 비판할 부분을 찾아야 했다. 위 리포트를 준비하며 본인은 (리포트에서 서론에서의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의 논점에 관한 문제 제기 부분, 본문에서의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부분의 내용)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가상의 환경에서의 주주총회에 있어서 기술적 부분을 맡아 자료를 조사하고 논문을 찾아 읽었다. 메타버스에 관하여 주주와 그 이해관계자 및 기업의 주요 기밀 정보 등의 악의적 의도를 가진 제3자에 의한 해킹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해킹을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기업정보, 그 밖의 피해에 대해 기술하였고 앞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기에 그 작게나마 발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나아가 그에 부수되는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VR기기, 정보 보안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의 운용, 유지 등의 과도한 비용 발생의 효율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을 기술하였다. 위 내용을 들을 기술하며 다양한 논문을 읽어보았고 많은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다른 과목인 가천대학교 겸임 교수인 김시홍 교수의 전자거래법에서 다룬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법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겼다. 법학은 암기가 아닌 ‘리걸마인드’ 함양을 통한 응용이란 점은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리포트를 통해 느낀 그 새로운 관점이란 것은 바로 ‘창의력’이다. 법학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걸쳐 작용한다. 점차 복합화되고 있는 시대에 법학 역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같이 발걸음을 맞추며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야 하고 거기에는 응용과 창의적인 발상으로의 새로움이라는 요소가 요구된다.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며 느낀 바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팀플레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조원들과 협동하고 함께 고민하며 혼자서는 생각해내지 못하는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고작용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갔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깨닫고 느끼게 해 주신 그대로, 또 지난 학기 상사법의 기초이해 수업에서도 느꼈고 이번 회사법 수업을 하면서도 느꼈듯이 대학은 단순한 지식만을 얻어가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무언가를 깨닫기도 하고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얻어가고 몸소 느끼는 곳이 대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제를 진행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 팀플레이 과제를 통하여 앞서 말한 덕목을 쌓을 수 있었고 대학다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외에도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조원들을 이끌어 나가며 검토를 해나가는 동시에 보고서 히스토리 작성을 끝으로 리더십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201932414 김도현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비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민법과 회사법의 전반적인 취지를 함께 설명해 주셔서 논문들을 읽기가 수월했으나,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 새롭게 비판을 하려고 하니 막막했다. 왜냐하면 상법 관련 과목은 모두 서완석 교수님에게서 배워와서 그런지 교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타당하고 옳은 말이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주주총회의 형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용어도 다 달랐다는 것도 어려움에 한몫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고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상법의 개정도 어느 정도 돼있었다. 상법이 상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개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하튼 이런 빠른 개정은 2000년대 논문을 읽고 법적인 측면에서 반박을 하려고 하니 현재에 와서는 이미 상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할 순 없는 것이고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오히려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했다. 일단 해보니 교수님의 견해와 다른 점들이나 새로운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가령 364조의 소집지 관련해서 이거나 입법 취지 관련해서 일 수도 있고, 본인확인 문제에서 ID를 활용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등이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주주총회 사례들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메타버스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메타버스 공간의 문제와 정보 격차에 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염밀히 보면 법적인 측면은 아님,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넣어도 논리가 일정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했다.

또한 학과에서 하는 팀플이어서 일부는 친한 사람들이고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몇 단계 건너면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같이하는 친구들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같이 하니 매우 수월했다. 모두들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 와중에도 성우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크다.

202132940 서지후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딱히 비판할 요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른 나라의 현행법이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이 되어있어서 읽기에 부담이 없었고 이해가 되어 어떠한 점에 대해 비판해야 하는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하지만, 팀원들과 처음 회의를 통해 개요를 구상할 때 단순 읽기가 아닌 의문을 품고 논문을 접하며 읽는 모습들을 통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기에는 무리인 요소들이 보였다. 이를 서완석 교수님처럼 법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로 따로 나눠 생각하다 보니 논문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야로 우리의 현재 기술로, 현재 상법으로 활용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바라보았을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다. 특히나 법적인 문제로는 현행법상 소집지의 인정 여부 문제로 아직 온라인상의 공간이 인정될 수 없고, 기술적인 문제로는 보안,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가상주주총회를 안전하게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고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가능할 것 같다.

201932408 곽민규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논문이 아직 나한테는 조금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만 봤을 땐 어렵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해주시는 것처럼 논문 역시 무지한 내가 읽어도 이해가 잘 되게 써주셨다. 하지만 처음엔 이해가 되는 게 컷지 이에 비판하려고 하니까 다 맞는 말 같고 찾기 힘들었다. 그래도 읽다 보니 점점 이해되면서 깊게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씩 교수님의 논문에 반대되는 의견의 근거에 대한 논문이나 기사 등을 찾아보았다. 이번 과제에서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기술적 문제점을 찾아보고 특히 정보 격차와 비용 발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메타버스를 주주총회에 접목하면 일단 주주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양한 격차가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점점 발전되고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 환경적, 경제적, 접근성 등으로 인한 격차로 전자주주총회의 장점들이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 격차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개발비용과 초기비용 등을 따지면 그냥 비용이 언제 들어가느냐 차이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런 기술적 문제점을 찾다 보니 주주총회에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은 무리이고 아직 많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논문을 읽고 비판을 하는 과제를 통해 그냥 책으로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더 흥미가 생기고 이해가 잘 되었다.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와 폭넓은 범위의 지식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이렇게 정해진 틀이 없고 내 생각으로 결론까지 도출해내는 과제는 처음인 것 같다. 그리고 팀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과제를 하다 보니 처음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된 것 같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 비슷하게 생각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조율하는 방법, 팀플의 진행방식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과제 동안 다들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박성우 학우분이 다른 조원을 잘 서포트하고 리드해줘서 이 팀플과제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된 그것 같아 고마움을 느낀다.

202132999 한수민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논문의 주제를 들었을 때 막막했지만 교수님의 논문에 모든 유형에 대한 장단점과 예시, 논점, 해결방안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막힘없이 읽어나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판할 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해당 가상주주총회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생각하다보니 아직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법적, 기술적 문제들이 있었다. 본인은 논문에서 하이브리드형 주주총회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 위 유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수님 논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대면주주총회와 가상주주총회의 단점을 보완하기는 하였으나 이것 역시도 문제점이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현재 여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하이브리드형 주주총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대학에 들어와 처음 제대로 해본 팀플인 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논문에 대해 계속해서 분석하고 여러 논문을 비교하며 읽어가는 등 여러 심화적인 과정을 거쳐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V.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회사법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1차 회의	
일시	2022.10.29.(토)
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법과대학 5F 아르테크네
참여자	박성우, 김도현, 곽민규, 한수민, 서지후
회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의 내용 숙지 확인 리포트 기술의 전체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 본론, 결론, 이외의 사항에 대한 간략한 순서 토의 위 논문에 대한 논점 제기 및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관점에서의 분석 (김도현, 서지후) - 기술, 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박성우, 곽민규, 한수민) 본론 기재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세부적 계획 의논

회사법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2차 회의	
일시	2022.11.05.(토)
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법과대학 5F 아르테크네
참여자	박성우, 김도현, 곽민규, 한수민, 서지후
회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론 기재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세부적 계획 의논 이행 여부 검토 역할 분담에 따른 개인 조사자료 검토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석에서의 관련 논문, 기사, 자료 등 관련성 및 적절성 검토 차주 리포트 마무리 단계에서의 각각의 결론 맺음 및 느낀 점 서술 이행 지시

회사법 보고서 작성 히스토리	
3차 회의	
일시	2022.11.12.(토)
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법과대학 5F 아르테크네
참여자	박성우, 김도현, 곽민규, 한수민, 서지후
회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포트의 완성본 재검토 및 오타, 리포트 작성 취지의 전체적 흐름 확인 리포트 최종 제출 이전 양식 및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검토

VI. 구성원들에 대한 자체 평가

<201833236 박성우>

구성원	평가 등급	평가 내용
김도현	A+	이번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맡은 일 외에도 주도적으로 나서며 이끌어 나갔고 다른 팀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논문들을 찾아 읽어보는 등 주도적으로 내용을 조사해 왔고 기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을 합치는 것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곽민규	A+	이번 팀플에서 리더격 역할로 다른 조원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잘 도와주고 과제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논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다른 학우들의 내용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였다. 또 기술적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조사하며 조원인 나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좋은점, 부족한점 등 피드백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해줌으로써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한수민	A+	팀의 리더 역할을 맡아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내주었다. 또한 개요작성부터 히스토리 작성까지 여러 부분에 기여하였으며, 조원들의 논문에 대해 빠른 피드백을 제시하여 진행이 수월하게 해 주었다. 본인이 맡은 기술, 제도적 부분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임해주었다.
서지후	A+	이번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 역할로 첫 시작인 개요부터 통솔력 있게 진행해주셨다. 본인의 역할 외에도 다른 팀원이 힘들어하면 늘 옆에서 도와주셨고 먼저 나서서 본인 일처럼 함께해 주셔서 이번 팀 프로젝트가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201932414 김도현>

구성원	평가 등급	평가 내용
박성우	A+	논문에 관한 리포트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였고 법률적 부분의 역할을 먼저 나서 성실히 자료 및 논문을 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기에 리포트를 기술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근 개정된 부분에 대해 조원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맡은 바를 원활하게 이행하였기에 전체적인 리포트 수정과정에서 김도현 학우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재기술할 부분이 없었다.
곽민규	A+	논문을 법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조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서지후 학우랑 같은 법률적 부분을 조사하였는데 서로 공유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이끌어 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다. 그리고 기술적-법적 관점 자료를 합치는데

		기여를 하였다. 다른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법 과제에 열정을 많이 쏟고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
한수민	A+	법률적 부분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사하고 보충하며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법률적인 부분을 조사했지만 기술, 제도적 부분과 법률적 부분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다른 조원들의 논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논문이 완성도 높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주었다. 또한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거나 어려운 용어를 따로 조사하여 조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서지후	A+	함께 법률적 부분에 대해 찾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첨삭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도해 주셨고, 흑여 틀린 부분이 생기면 수정해 주시는 등 늘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다. 혼자 했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부분의 수정과 찾지 못했을 논점 등을 먼저 찾아주셔서 더 양질의 리포트가 완성될 수 있었다.

<201932408 꽈민규>

구성원	평가 등급	평가 내용
박성우	A+	리포트를 진행함에 있어 기술적 부분에 대한 기술 역할을 맡아 성실히 임해 주었다. 해당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세세한 용어에 대한 정리를 검토해 주었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정보격차에 관한 사항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어 수월한 리포트 진행을 도왔다.
김도현	A+	기술적인 측면을 맡아서 성실히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여 타에 귀감이 되었다. 또한 늦은 시간에도 학교에 나와 열심히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맡은 바 일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한수민	A+	기술, 제도적 부분을 조사하며 다른 조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논문을 읽으며 중요한 단어나 논문을 작성하며 도움이 될만한 단어들을 조사하고 이를 조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조원들의 논문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조원들의 논문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피드백을 해주는 등 논문의 완성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인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해내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서지후	A+	자신의 의견과 함께 다른 조원의 의견에 부족한 부분을 참고하여 덧붙이고 함께 의논해 나가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셨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조금 더 명확한 리포트가 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셨다.

<202132999 한수민>

구성원	평가 등급	평가 내용
박성우	A+	리포트를 진행함에 있어 기술적 부분에 대한 기술 역할을 맡아 성실히 임해 주었다. 특히, 기술적 논점을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방식에 있어서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며 많은 의견을 내어 주었기에 새로운 전개 과정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이 나지 않았음에도 새벽까지 보고서 작성에 힘써 줌에 고마움을 느꼈다.
김도현	A+	늦게 끝나는 알바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나, 맡은 바 일에 새벽 4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한 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자료조사 및 정리를 하였으며 서지후 학우와 함께 오타 수정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곽민규	A+	같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다가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을 느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전자주주총회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고 예리하게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진행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바쁜 일정이 있었음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서지후	A+	리포트에서 특히나 하이브리드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 전반적인 면을 진행해 줌에 있어 가상주주총회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간 리포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늘 새벽까지 열정적으로 임해 주었다.

<202132940 서지후>

구성원	평가 등급	평가 내용
박성우	A+	리포트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적 부분에 대한 기술 역할을 맡아 성실히 임해 주었다. 특히, 소집 절차의 전자화, 출석 여부의 판단 문제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리포트를 진행해 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리포트를 완성하고 마지막 검토 단계에 들어감에 있어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자발적으로 나서 보완을 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보여주었다.
김도현	A+	같은 법률적인 부분을 맡았다. 법이 개정된 부분이 많고 팀 프로젝트 특성상 수시로 대화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즉각적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협력 관계로 이어졌다. 내가 찾았던 것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와주기도 하고,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에 오타 정리 등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

곽민규	A+	김도현 학우와 같이 법률적 관점에서 조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을 서로 잘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토-수정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한수민	A+	법률적인 부분을 조사함에 있어서 팀원인 김도현 학우와 함께 내용을 맞춰가며 다른 조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논문의 검토와 수정을 힘써주었다. 끊임없이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